

# 제30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결 규칙 공포문

- 공 포 일: 2026. 4. 13.
- 공포방법: 함평군의회 홈페이지 게시
- 공포규칙: 1건

공포번호	규 칙 명
제41호	함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

**함 평 군 의 회**  
(의 회 사 무 과)

# 규 칙 공 포 문

제30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함평군의회 의원 공무  
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4월 13일

함평군의회 의장

이 봉 오



함평군의회 규칙 제41호

## 함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함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 
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  
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  
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  
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 
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  
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 
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2항,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,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누리집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